**양식 제56** (제111조 관련)

의약품

외국제조 의약부외품 제조판매 승인사항 경미한 변경 신고서

화장품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승인번호 | |  | | 승인 연월일 |  | |
| 명칭 | 일반적 명칭 |  | | | | |
| 판매명 |  | | | | |
| 변경내용 | 사항 | | 변경전 | | | 변경후 |
|  | |  | | |  |
| 변경 연월일 | |  | | | | |
| 변경 이유 | |  | | | | |
| 비고 | |  | | | | |

의약품

위와 같이, 외국제조 의약부외품의 제조판매 승인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.

화장품

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주소 | 일본어 |
| 외국어  (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) |
| 성명 | 일본어 |
| 외국어  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
| 선임 외국제조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| |
| 주소 | (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) |
|  |  |
| 성명 | 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

|  |  |
| --- | --- |
|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이사장 | 귀하 |

(주의)

1. 용지 크기는 일본공업규격 A4로 할 것.
2. 이 신고서는 정/부 2통을 제출할 것.
3. 글자는 먹, 잉크 등을 사용하며, 일본어는 정자체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.